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함은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수행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창의성,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고교 및 본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채용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직무수행을 위하여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
4. “전환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직원으로서 입학사정관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
5. “교수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교원으로서 입학사정관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
6.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학생선발기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교에서 위촉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

제3조 (입학사정관 구성) 입학사정관은 다음과 같다.

1. 전임사정관 :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2. 위촉사정관 : 내부위촉사정관, 외부위촉사정관

제4조 (입학사정관 임용) ① 채용사정관은 석사학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환사정관과 교수사정관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전임사정관 중 연구업적 및 경력이 탁월한 경우 입학사정관실장으로 명할 수 있다.
- ③ 채용사정관의 보수, 모집분야, 자격 및 선발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내부위촉사정관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외부위촉사정관은 교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입학사정관 업무)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부종합전형 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설계
2. 학생부종합전형 자격심사·서류평가·면접평가 등 각종 심사
3. 국내·외 고교 정보수집, 전형 및 전형결과 분석
4. 고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 및 시행
5. 입학상담·홍보·입시지원 등 기타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6.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 참여

7. 본교 입학사정관윤리강령(별지1)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윤리강령 준수

제6조 (입학사정관 평가) 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다수 사정관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자의 학업성적, 교내·외 활동 및 그 밖의 전형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입학사정관 간의 평정 점수 차이가 정해진 기준을 벗어날 경우는 재평가를 시행하되 재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전형별로 정할 수 있다.

④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는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제7조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처 내에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 “종합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전형위원회는 전임사정관과 내부위촉사정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입학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선임한다.

③ 종합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종합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종합 사정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입학사정업무 회피 및 제척) 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직계가족, 친인척, 지인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본교에 지원한 경우 또는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회피·제척 사유서(별지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은 평가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한다.

③ 이 외의 회피·제척 제도에 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유사도 검증) ① 입학전형과정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검증시스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정성확보 시스템 유사도검색)을 이용하여 표절의심 학생을 선별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선별한 표절 의심 학생은 종합전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별표 1)에 대하여 종합전형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②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통보(별표 2)한다.

③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입학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 구성시 해당 전형 평가위원은 재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재평가의 결과는 기

발표한 해당전형의 타 수험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학생부종합전형 연구위원회)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관련자는 법령과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별지4).

제13조 (입학전형발전 연구과제) 입학전형발전을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에게 연구과제를 공모 및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종합전형 및 입학사정관제 운영사항, 본교 인사규정 및 기타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우리는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서 “진리와 성결”을 지향하는 인재 선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에 공정하고 책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선언한다.

1. 서울신학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되며 본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
 - 가. 전문성 :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 연구와 업무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 나. 협동 :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타 대학 및 대학교육협의회, 정부 관계자, 고등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 힘쓴다.
 - 다. 신뢰와 공정성 : 입학사정관은 상호신뢰와 존중, 정직성을 바탕으로 동료 및 학내외 관련자들을 대하며 모든 입학 지원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라. 입학업무 수행과정에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출신지역, 장애, 연령, 기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학과소개, 장학금, 입학절차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지원자가 합리적으로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대학 간 및 고등학교 간 비교나 비방의 말을 하지 않는다.
5. 상담 및 선발 업무 중 획득한 개인정보 등은 업무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제3자에 유출하지 아니 한다. 공익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활용해야 할 경우는 용도를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한다.
6. 대학 홍보 및 진로 상담을 위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하거나 서울신학대학교에 방문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만나는 경우, 방문이나 상담의 대가로 금품을 수

수하지 않는다.

7. 학생 선발과 심사 과정에서 압력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8. 선발과정이 종료되어 공식적인 합격자발표가 있을 때까지 관계자 이외의 특정 인이나 단체에게 전형결과를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9. 입학전형의 기획은 특성화를 지향하되 그 기본이 되는 본교의 건학이념,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과 잠재력이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당한 준거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설계, 개선해나간다.
10. 입학사정관은 다음의 기본적 업무범위를 숙지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가.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 추적, 관리한다.
 - 나. 대학신입생 자질에 관한 학내 교수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전형방안을 개발 및 개선한다.
 - 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전형자료를 소중히 다루고 보관하며 심사 평가한다.
 - 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대학 재학 중 학업과 적응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 _____(인)

[별지 2]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__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입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부정, 보안 위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채용입학사정관 서약서

본인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따라 퇴직 이후에도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사정관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본인의 현황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4]

20 ____ 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회피·제척 사유서

교직원	소 속		
	성 명		
모집시기	수시()		기타()
구 분			
제척()		회피()	
※ 평가자가 지원자와 가족·친척관계일 때 입학 평가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		※ 일반적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지원했거나 지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입시 업무에서 피하는 것.	
제척 사유	지원학과(부)		회피 사유
	성 명		
	교직원과의 관계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별표1] 입학전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제 0000-00호

입학전형 이의신청서

1. 기본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형명		수험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2. 이의사항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입학처장) 귀하

[별표2] 입학전형 이의신청결정서

입학전형 이의신청결정서

접수번호: 제0000-00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형명		수험번호	남	여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이의신청 내용

결정내용

결정이유

년 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인)